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송 · 변 전 설 비 주 변 지 역 의 보 상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4.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정산한 후 발생한 낙찰차액·정산차액 등에 대한 이월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변경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안 제22조)

-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변경요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함

- 3)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요건을 주민의 4분의 3이상 동의로 완화하게 됨에 따라 주민의사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의 통상적인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근거 마련(안 제26조)

- 1)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2025.12.10.)을 반영하여 마을 공동사업 지원금의 통상적인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2)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집행·정산한 후 발생한 낙찰차액·정산차액 등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3) 해당연도 지원금을 사용하고 남은 통상적인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전체가”를 “4분의3 이상이”로 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절감되어”를 “절감되거나,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정산한 후 발생한 낙찰차액·정산차액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집행한”을 “배정된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집행한”으로,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빼고”를 “금액을 빼고”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금 비율에 대하여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아 그 비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② (생략)	제22조(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 ① ----- ----- ----- ----- ----- ----- ----- 4분 <u>의3 이상</u> 이 ----- ----- ----.
제26조(지원금의 관리) ① (생략) ②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지원금(이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26조(지원금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지원사업의 시행자 또는 주민의 노력으로 사업자 부담 지원금이 <u>절감되어</u>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③ 사업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사업자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하며, 제2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을 의뢰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u>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집행한 결과 잔액이 발생</u>하게 된 경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연도에 그 잔액에 해당하는 <u>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빼고</u> 지급할 수 있다.	4. ----- ----- ----- <u>절감되거나,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정산한 후 발생한 낙찰차액·정산차액 등으로</u> ----- ③ ----- ----- ----- ----- ----- <u>배정된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집행한</u> ----- ----- ----- ----- <u>금액을 빼고</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5124